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20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문진석 · 허 영

강선우 · 김교흥 · 정을호

손명수 • 박상혁 • 한민수

윤종군 • 복기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국 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, 정부는 반지하·쪽 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,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·추진해 왔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·쪽방 등 이른바 '비주택'이나 지하주택,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 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'비주택'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, 반지하주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 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 칙에 추가하고,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,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・추진하도록 하고, 반 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거실을 설치한 건축물(이하 "반지하주택"이라 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
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	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
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	
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	
정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.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</u>
	이나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
	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
	또는 일부에 거실을 설치한
	건축물 (이하 "반지하주택"이
	라 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
	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
	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
	<u>향상되도록 할 것</u>
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	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	
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	
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	
(이하 "주거종합계획"이라 한	
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.</u>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
	이나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
	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